《문화통치》시기 일제의 《보통경찰제도》는 헌병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한 기만적인 식민지폭압제도

한 정 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가는곳마다에 군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온갖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늘어놓고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 저 모조리 빼앗았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451폐지)

일제는 조선에서 세계식민지통치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한 식민지통 치를 실시하였다.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1919년 3.1인민봉기에 질겁한 일제는 포악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고 이해 8월 19일부터 조선에서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가 떠든 《보통경찰제도》란 기구체계상 그전처럼 헌병과 경찰을 하나로 합친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명목상 따로따로 분리시켰다고 하는 식민지폭압제도였다.

이 폭압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일제는 헌병과 경찰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기구였던 종래의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직속으로 경무국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각 도에는 도청안의 기구로서 경찰부를 새로 내왔다. 그리하여 《보통경찰제도》시기에는 종래의 헌병 경찰제도시기 총독부 경무총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던 경찰사무를 총독이, 도경무부가 독 단적으로 집행하던 경찰사무를 도지사들이 각각 장악관리하게 되였다.

일제는 바로 이러한 경찰기구의 변동과 경찰사무책임한계의 변화를 크게 내세우면서 헌병경찰제도는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도》가 수립되었기때문에 무단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새롭고 완화된 《문화경찰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보통경찰제도》는 조선인민에 대한 헌병경찰폭압을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더욱 강화시킨 기만적인 식민지폭압제도였다.

《보통경찰제도》가 헌병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한 기만적인 식민지폭압제도였다는것은 첫째로, 조선사람들에 대한 폭압기구인 헌병과 경찰이 헌병경찰제도때보다 훨씬 강화된것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일제는 우선 조선인민을 직접 감시하고 탄압하는 기구인 경찰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미즈노가 경찰들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며 우리 국권에 반항하는자가 있다면 단연 용서할수 없다. 소위 〈추상렬일(독한 가을서리와 무섭게 내리 쬐는 해빛)〉의 감으로 이에 림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명령한것과 일제가 《경찰이 치안을 유지할수 없다면 그자체가 새 정치의 실패이다. 이 의미에서 경찰의 수립은 가장 중요한것으로서 잠시라도 완만히 할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줴친것은 조선사람은 죽지 않으려면 식민지통치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한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의 폭언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것으로서 조선인민을 무자비하게 폭압하고 경찰을 더욱 강화하려는 일제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것이였다.

경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제는 경찰비지출부터 늘였다. 이에 대하여 미즈노는 《나는 경찰비를 증가시키는것을 첫째가는 주목적으로 하여 예산을 짰다.》라고 떠벌였다. 일제가 무단통치기간 조선인민을 가장 대규모적으로 탄압한 1919년에 약 1 700만원의 경찰비를 지출하였다면 《문화통치》를 떠든 1920년부터 그것은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여 1922년에는 일약 2 200만원으로 뛰여올랐다. 경찰비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경찰력량과 장비의 강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보통경찰제도》가 헌병경찰제도보다 약화된 경찰제도가 아니라 더 강화된 기만적인 경찰제도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찰비가 증가됨에 따라 경찰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증가되였다.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기 직전에 조선에 있은 경찰기관총수는 740 개였다. 그런데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한 이후인 1923년에 이르러 경찰기관수는 2 759 개로 늘어났다. 이것은 1919년 8월부터 1923년말에 이르는 4~5개월기간에 경찰기관만하여도 약 4배로 늘어났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찰기관이 팽창됨에 따라 경찰수도 늘어났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새로 내오기 전인 1919년현재 조선에는 6 339명의 일본경찰이 있었다. 그러나 경무국을 새로 설치한 후인 1920년에는 헌병을 제외한 경찰만 하여도 1만 6 897명에 달하였으며 1921년에 와서는 다시 1만 9 188명으로, 1922년에는 일약 2만 77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시기 일제는 불량배, 폭력배, 사기군, 음모가 등 친일분자들을 긁어모아 경찰수를 대폭 늘이였다.

일제는 경찰수를 늘이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폭압적기질을 키워주기 위하여 1919년 8월 19일에 《경찰관강습소관제》를 제정하고 서울과 각 도들에 경찰관강습소를 설치하였으며 거기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감시탄압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였다.

일제는 또한 경찰의 무장장비도 더욱 보충강화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할 당시 경찰용무기는 보총 5 657정, 권총 1 272정이였는데 1922년 10월에 이르러서는 보총 1만 3 894정, 권총 4 563정으로 서 2.6배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매개 경찰서에 경기관총을 3~4정, 매개 주재소에는 1정 씩 배당함으로써 경찰의 무장을 보다 강화하였다.

무장장비의 강화와 함께 경찰통신망도 더욱 확장하였다.

1919년 7월현재 일제경찰의 경비전화선이 6 588km였다면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한 이후인 1923년 8월현재의 그것은 일약 3만 176km로 즉 4.5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더욱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감시탄압하기 위하여 전조선을 경비전화선망으로 뒤덮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1923년 8월까지 해안경비선 5척과 발동기선 22척을 21개소의 해안경비초소들에 배치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해상경찰 감시를 강화하였다.

전국도처에 경찰서, 주재소, 파출소가 설치되여있었고 총칼로 무장하고 포승을 쥔 경 판들이 욱실거렸으며 경비전화선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 바다에서는 경찰경비선이 조선사 람들을 위협하고있었다.

《보통경찰제도》는 형식상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로 바꾼 기만적인 제도였으며 내용적으로는 헌병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한 교활하고 악랄한 제도였다.

일제는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하면서 경찰과 함께 헌병을 여전히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기구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헌병의 민사경찰권을 박탈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하게 하였다. 《보통경찰제도》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왕은 1919년 8월 19일《칙령》제397호 제2조에서《헌병은 그 직무집행에서 행정, 사법경찰에 관하여 조선 총독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교묘하게 규정해놓음으로써 헌병들이 종전대로 행정 및 사법 경찰권을 그대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칙령》에서도 조선총독은 당분간 조선 안의 헌병분대 또는 헌병분견소에 근무하는 헌병들로 하여금 경찰서에 속하는 직무를 집 행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병들에게 경찰권을 부여해주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한 후에도 헌병대장은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으로, 헌병장교는 도경무부장 또는 경시로 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헌병과 경찰 두 폭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본질상 헌병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병기관과 헌병인원수도 대량 늘구었다. 1923년에 조선에서 헌병분견소수는 2 784 개였는데 이것은 1919년의 1 073개(헌병 8 179명)보다 1 711개나 더 많은것으로서 그만큼 헌병수도 늘어났다는것을 말해준다. 1923년현재 조선에는 5 543개의 경찰 및 헌병기관들이 전개되여있었으며 그것들이 조선인민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완화된 경찰제도》라고 떠든 《보통경찰제도》는 사실상 헌병경찰제도 가 더욱 강화된 기만적인 식민지폭압제도였다.

《보통경찰제도》가 헌병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한 기만적인 식민지폭압제도였다는것은 둘째로, 《보통경찰제도》시기 일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폭압이 헌병경찰제도시기보다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보통경찰제도》시기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폭압이 헌병경찰제도때보다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는것은 우선 고등경찰의 감시와 탄압이 그전과는 비할바없이 강화된것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일제고등경찰의 주요임무는 눈에 잘 띠우지 않는 반일사상가들과 애국자들을 제때에 신속히 적발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것이였다.

당시 일제의 고등형사들과 그 앞잡이들은 군중집회, 연설회 등에 《림검》, 《림석》, 《사찰》 등의 명목으로 참가하고 장례식, 료정, 려관, 연회장소 지어는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곳에 각종 형식으로 스며들어 인민들의 동정을 날카롭게 감시하였으며 사소한 《불온언동》도 즉시로 적발, 처형하였다. 이와 함께 《요시찰인》을 비롯하여 경찰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항상 시야에 넣고 미행, 사찰, 불시심문, 예비검속 등을 강화하여 일거일동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였다.

고등경찰의 탄압책동이 강화되였다는것은 이 시기 비밀수배문전의 발송 및 접수건수가 급속히 증가한데서도 나타났다. 1921년부터 1922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경찰비밀수배문건을 발송하고 접수한 총건수는 143만 5 659건이나 되였는데 이것은 매월 평균 16만 1 305건, 매일 평균 5 453건이나 각각 급격히 늘어난것이였다.

이것은 경찰력사상 전례없는 일이였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극히 악랄하게 감행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등경찰에 의한 감시탄압의 마수는 조선뿐아니라 만주와 연해주지방에도 뻗치였다. 그것은 이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군부대와 애국자들의 사상동향과 활동을 제때에 탐지하며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만주주재 각 일본령사들로 하여금 밀정들을 대량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으로 《치안정보》를 수집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즈노는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만주에 파견하여 재만주령사와 협력하여 밀접한 련락을 유지하고 부정선인취체를 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기관으로서 서로 련락을 취하게 하였다.》라고 떠벌였다. 이러한 사실은 《보통경찰제도》시기 일제의 경찰적탄압이 헌병경찰제도때보다 더 교활하고 째였을뿐아니라 그 탄압령역이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에 일제는 헌병과 경찰을 한층 증강한데 기초하여 조금이라도 반일적요소가 있다고 보이는 조선사람들은 모조리 검거투옥하였다.

1920년대에 검거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1922~1927년사이의 검거총인원수는 129만 4 403명에 달하였다. 당시의 조선인구를 2 000만명으로 볼 때 이것은 약 15명당 1명의비률로 조선인민을 검거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헌병경찰제도시기에도 없었던것으로서 《보통경찰제도》시기에 조선사람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이 보다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일제는 《치안을 저해하는 언동이 있을 경우에 경찰은 즉시로 이것을 처단하는 자유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공공연히 되까리면서 주저없이 경찰즉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즉결건수와 인원수도 해마다 늘어나 1922~1927년사이에 건수는 6만 2 747건으로부터 7만 1 743건으로, 인원수는 7만 7 499명으로부터 8만 6 958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일제는 무고한 조선인민들을 《죄인》으로 몰아 체포하고 그들에게 가혹하기 그지없는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였다.

일제는 《보통경찰제도》의 기만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중세기의 야만적형벌제도였던 《태형령》을 폐지한다고 선포하였지만 실지로는 《태형령》을 릉가하는 야수적인 고문을 적용하였다.

당시 일제는 고문을 할 때 입을 심하게 틀어막았으며 고문실에 방음장치를 철저히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경찰관주재소 구류장, 경찰소류치장에서는 입을 틀어막은 고문이 감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밖에까지 소란스럽게 들려와 사람들이 치를 떨게 하였다.

이 시기 일제의 고문은 특히 도경찰부에서 심하게 감행되였다.

당시 도경찰부는 혹형의 기본장소였다. 도경찰부류치장에는 각종 형구가 갖추어져있 었으며 많은 전문적인 형리들이 배속되여있었다.

《보통경찰제도》밑에서 감행한 일제경찰의 혹형이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는것은 평북도의 《경찰관교습소》 교감으로 있은 이따찌의 행위를 실례로 들수 있다. 이자는 1921년 12월 8일 독립군이 자강도 초산군 서면의 영림서를 습격하고 일본인 2명을 격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20명의 경찰교습생들을 끌고가서 부락민 32명을 《내통자》라는 구실밑에 체포하여 12월 11일 압록강의 얼음구멍에 산채로 밀어넣어 죽였다. 뿐만아니라 이자는 1922년 어느날독립군이 자강도 위원군(당시) 화창면 대안동주재소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한것을 구실로 《시국강연회》라는 명목밑에 부락민 73명을 교회당에 모이게 한 다음 출입문에 못을 박고불을 질러 처참히 태워죽이는 귀축같은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보통경찰제도》는 포악한 무단통치를 완화한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폭압 통치를 실시한 악랄한 헌병경찰폭압제도였다.

우리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식민지적폭압의 교활성과 포악성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오늘 또다시 조선에 대한 재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 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